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박채아 의원 외 9명)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채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0
----------	-----

발의연월일 : 2020. 8. 14.

발 의 자 : 박채아·조주홍·김영선
이선희·박판수·오세혁
이동엽·권광택·박차양
나기보 의원(10명)

1. 제정이유

- 최근 문화예술의 창작 및 향유 기반 조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보와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지원 시책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나.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도교육청,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3조, 제5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제12조

5.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 붙임

나.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해당부서 의견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 붙임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창작활동과 도민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작공간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사업

5.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경상북도 간행물,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법무혁신담당관	안 제5조	
	- 제1항	<문장 수정 필요> -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의 체계적인 지원 ⇒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또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체계적인 지원
	- 제2항제3호	<문장 수정 필요> - 제7조의 창작공간 지원사업 ⇒ 제7조의 지원사업
	안 제7조	
	- 제2항	<띄어쓰기 수정 필요> - 관련법인·단체 ⇒ 관련 법인·단체
	안 제8조	<띄어쓰기 수정 필요> - 관련기관·단체 ⇒ 관련 기관·단체 ※ 안 제7조제2항과 표현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 규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황 지 훈
입 안 주 무 부 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20. 6. 1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체크리스트(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문화예술과)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문화예술과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안 제7조 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음악창작소 조성	1,000	100	100	100	100	1,400
	○ 웹툰캠퍼스 조성	350	100	100	100	100	750
	소계(a)	1,350	200	200	200	200	2,150
세출	○ 음악창작소 조성	2,000	400	400	400	400	3,600
	○ 웹툰캠퍼스 조성	800	300	300	300	300	2,000
	○ 청년예술촌조성	600	300	300	300	300	1,800
	○ 레지던시프로그램	200	200	250	250	250	1,150
	○ 문화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200	200	200	200	800
	소계(b)	3,600	1,400	1,450	1,450	1,450	9,350
□ 총 비용(a-b)		2,250	1,200	1,250	1,250	1,250	7,200

※ 문화예술과 : 청년예술촌, 레지던시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산업과 : 음악창작소 조성, 웹툰캠퍼스 조성

4. 재원조달 방안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 분	국비	1,350	200	200	200	200	2,150
	일반회계	1,225	600	650	650	650	3,775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1,025	600	600	600	600	3,425
민간							
기타							
합계		3,600	1,400	1,450	1,450	1,450	9,350

5. 부대의견

- 본 조례안 제7조의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이후 실질적인 비용의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김수미 (054-880-3121)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 사업 및 추진중인 문화예술창작공간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조례 제정 이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됨

나. 비용추계 방법

-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조성 및 향후 예상되는 운영비 산정
- 청년예술촌 조성 및 레지던시프로그램 지원 반영
- 조례 제정 이후 지역 문화예술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가

2. 비용추계 시 중점 고려사항

- 문화예술과 및 문화산업과의 추진 중인 사업을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운영비 및 프로그램지원사업 반영하였으나, 지원계획수립 반영 및 국비 사업 확보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경 상 북 도

함께
다함께
함께

수신 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문화예술과-7132(2020.6.24.)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 명	검 토 의 견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 한 조 례 안	○ 본 조례안은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사업)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국비사업을 포함한 5년간 도비 38억원*(연평균 7.6억원)의 비용이 소요됨 *보조비율 : 도비 52%, 시군비 48% ○ 향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이후 사업 확대 등 도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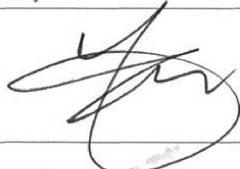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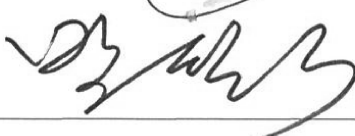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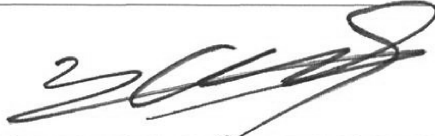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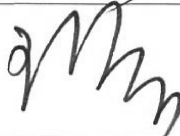
끝.

예 산 담 당 시 관 정 찬

주무관	이근호	예산총괄팀장	서한교	예산담당관	전결 2020. 6. 26.	서정찬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8109	(2020. 6. 26.)	접수	문화예술과-7221	(2020. 6. 26.)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soyiumul@korea.kr	/ 비공개(5)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박 채 아		
조 주 흥		
김 영 선		
이 선 희		
박 현 수		
윤 씨 혁		
이 동 업		
최 상 혁		
백 미 영		
나 기 보	